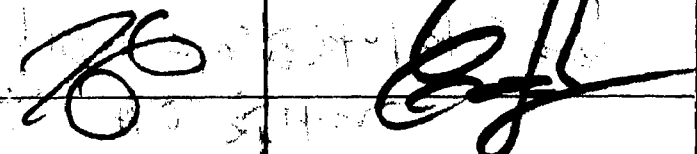


# 고시

## 기안용지

고시제 2호

문류기호 문서번호	공보 1080 548 (전화번호 757834)	전결규정	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관	제1부시각	시	각
시행일자			
보존년한			
보			
조	공보시각	협	시인시각
기	문화시각	부위과 (고시안결재)	문화시각
관			문화시각

기안책임자	김영재 6	발송	통계
정수신참조	각안참조	발행 1978. 8. 18	1978. 18

제 목: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단 제1안 내부결재

1.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단 부초조례 제6조의  
 규정이 의결이 77 6 7 14:00 개회한 서울특  
 별시 지방문화재단 위원회의 과부를 받아 다음  
 부처를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단 지령 제  
 동조례 제8조 규정이 따라 별첨과 같이  
 조리 관내

정서  
1/6  
관인  
발송

가 지령대상위원회

종별	지령번호	문항내역	소재지	비고
지방위원회	16호	건사건과청사	성북구	지방위원회 (청원명)
	17호	보은구법률	내외부	청원명
	18호	수출	청원명	197
첨부	1)	고시안	1부	
	2)	지령대상조사보고서	1부	
	3)	위원회위원회회의록	1부	결

제2안

주신 부속공보부감안  
 감조 부속대관리국감  
 제 목 서울특별시의 지방위원회 지령보고  
 1 서울특별시의 지방위원회 최초로 제6호의 지령  
 이 의결하여 그 6 서울특별시의 지방위원회 위원회의  
 의결을 받아 아래위원회(3건)을 서울특별시의 지방  
 위원회로 지령하였기 보고 장년  
 2 서울특별시의 지방위원회 지령목록  
 (원안가름이기시령안)

제3안

주신 부속공보부감안 . . . . .



사

표시안심사 1973.6.14 제 101 호  
 심 사 사 사 제 제 장 법 무 과 장  
 홍 ( ) ( )

고 시 기  
 ← 다음특별시 고시 제 호

다음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

다음특별시 지방문화재 문화용어규정의 지정해당기  
~~의 고시~~ 다음특별시 지방문화재 문화용어규정 제 2호 제 5조의 규정이 ~~따라서~~ ~~다음과~~ ~~같이~~ 고시합니다.  
 이를

다음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목록

종 별	지정번호	문화재명	소재지	지정년월일
지방유형문화재	제 16호	전사전유정사	남양주대능동 <del>동</del>	73. 6
"	제 17호	보도각 벽화	남양주대능동 8	"
"	제 18호	수 루 교	남양주대능동 2기 197	"

1973 6

다음특별시 광 양 령 의